

정비업의 등록

가. 정비업 등록신청 관련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차 신청 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 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5.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 2차 신청 서류 :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정비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 승낙서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인력기준 [근거 : 부산시조례 2016. 3. 30일 개정]

구 분	인 력 기 준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 정비요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종합 3명이상·소형 2명이상·원동기 2명이상 (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요원 중 1명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른 정비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정비요원의 수는 정비에 종사하는 총인원 수의 5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설기준 [근거 : 부산시 조례 [별표2] 2016. 3. 30 개정]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

구 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원동기 전문 정비업
가. 시설면적	1,000m ² 이상	400m ² 이상	70m ² 이상	300m ² 이상
나. 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다. 정비·검사 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사. 매연측정기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나. 압력측정기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라. 휠밸런스	○	○	-
	마. 토인측정기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아. 노즐시험기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시설은 다음 각 목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오·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정비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 :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나.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휠얼라이언트(복합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와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8.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는 조건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3.3.>
 9. 정비요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정비에 종사하는 총 인원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의 수는 정비에 종사하는 총 인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6.3.30.>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설기준 사진(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도계시험기 2. 제동력시험기 (롤러가 울퉁불퉁) 3. 사이드슬립측정기 	 <p style="text-align: center;">ABS 자동판정 시스템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전조등시험기 	 <p style="text-align: center;">http://ts09.co.k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2 GAS 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일체형) 	

5-2. 3 GAS 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공기과잉율측정기 일체형)



6-1. 여지 반사식
매연측정기(수동)



6-2. 광투과식
매연측정기(자동)



7.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브란자시험기)

*점검·정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8. 휠얼라이언트 복합기를

갖춘 경우

10. 회전반경측정기

12. 토인측정기

13. 캠버캐스터 측정기

세 가지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9. 압력측정기



10. 회전반경측정기



11. 휠바란스측정기



12. 토인측정기

TO0057 토인게이지

- * 차량의 휠얼라이언트 교정시 타이어의 좌,우 토인각 측정시 사용
- * 정비공장 법정 장비
- * 이동범위:1000~2200m/m
- * 호스길이 :1200
- * 크기:폭110×이96×길이1776mm
- * 무게 :760kg
- * 아사히



13. 캠버/캐스터 측정기



캠버, 캐스터, 킹핀개까지

14. 도장시설(스프레이건포함)



15. 부동액회수재생기
(폐기물 위탁계약 시
대체 가능)



자동차정비업 허용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자동차 관련 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정비책임자 선·해임

가. 정비책임자 자격 조건(2007. 12. 7 개정·시행)

◎정비책임자 선임 가능한 자격증 종류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관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 ◎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정비책임자 선·해임 및 직무대행

- ◎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무대리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시 구비 서류

- ◎ 정비책임자 자격증원본, 사진1장(3×4), 정비책임자도장
- ◎ 정비기능사 경우 - 3년 이상 경력증명서(재직자의 경우: 3년 이상 재직증명서)
 - 또는 3년간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공단 서류 중 한 가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가입증명(가입자용)
 - 건강보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577-1000)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 ◎ 정비기능사2급인 경우 → 자동차정비기능사로 갱신 후 정비책임자 선임 가능

[조례 별표5]<개정 2016.3.30.>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제6조 관련)

업종	작업기준
1. 자동차 정비업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부속품 및 연료장치를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부속품을 탈착·부착하거나 정비할 수 없다.<개정 2016.3.30.>
2.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을 하는 때에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내거나 연료장치를 정비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근 후 작업에 임한다. 라.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 가스용기 내부의 액체가스는 잔가스처리(이송)설비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따라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가스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남은 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례 별표 3]<개정 2016.3.30.>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기준(제4조제3항 관련)

시 설 기 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가.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	○	○
나. 잔가스연소장치	○	○
다. 가스누출 감지기	○	○
라. 소화기	○	○

주)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참고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잔류가스회수장치”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용기부속품 : 용기에 직접 부착된 충전/기출/액출밸브, 액면계, 솔레노이드 유니트(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등을 말하며, 연료라인(파이프), 베이프라이저(기화기), 믹서 등은 해당 아님
- ◎ 잔류가스회수장치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 등

정비업의 사후관리

가.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작성 및 보관

◎ 작성내용 (필수 기재사항)

구분	작성내용
차량소유주란	차량등록번호, 차종, 주행거리, 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록년월일 점검·정비의뢰일자
정비업자란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점검·정비 내역란	작업내용별 부품구분(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 A / 재제조품: B / 중고재생품: C / 인증대체부품: D / 수입부품: F

⇒ 작성부수/보관 : 2부 작성하여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 관리 내용

◎ 점검·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책임

차령 구분 및 주행거리	무상점검일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 3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교부하고 제1항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원동기 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설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 92호 서식의 재생정비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정비이력 전송의 의무 (미전송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정비업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이력을 전송토록 규정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전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3 작업구분에 해당하는 62가지 항목은 빠짐없이 전송, 부품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작업구분 62가지에 해당하는 부품을 탈착했을 시에는 전송

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2013.12.12개정]

- 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홈페이지 자료실 #38 참고바람)
1.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 비용
 2.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 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 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4.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 한함)
 5. **진단요금**:자동차의 고장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사업의 금지행위

금지 행위	벌칙 (사업정지)	과징금 (만원)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위탁, 위임, 도급 등 용역포함)	1차 : 30일, 2차 : 90일, 3차 : 등록취소	200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전부 - 1차 : 30일, 2차 : 등록취소 일부 - 1차 : 10일, 2차 : 30일, 3차 : 90일	전부 300 일부 100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차 : 30일 2차:90일 3차 : 등록취소	200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1차 : 10일, 2차 : 30일, 3차 : 90일	100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등록취소	150
◦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양도·양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나. 휴업·폐업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